

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## 제1조(목적)

이 방법서는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58 조에 의거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그 외 관련 법규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.

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

### 1. 보수

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 다만 법 제 86조, 법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-65 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.
- 다. 판매회사 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라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보관,관리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일반사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- 바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.

### 2. 수수료

- 가. 선취판매수수료 :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

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.

나. 후취판매수수료 :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.

다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금전. 다만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#### **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**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성과수수료 부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#### **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**

- ①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 또는 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보수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#### **제6조(설명 의무)**

회사는 법 제 47 조 (설명 의무) 제 1 항 및 법 시행령 제 53 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7조(투자광고)**

회사는 투자광고 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 조 제 2 항 및 법 시행령 제 60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이 방법서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(공시 등)**

- ① 회사는 이 방법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3 항에 따라 이 방법서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